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2019.4.24.)

조례·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	1
2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3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5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4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6	거창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6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8, 신재화위원의 10인 발의
- 나. 회부일자 : 2019. 4. 8.
-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4.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재화 의원]

- 가. 제안이유
 -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3조)
 -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제7조)
 -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2조)
 -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리보호 및 증진 등(안 제13조 ~ 제19조)
 -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생활안정, 청년문화의 활성화, 권리보호 및 증진,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재승]

- 본 조례안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리보호 및 증진 등
 - 안 제20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복지·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가. 정치·경제·사회·복지·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강화
-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업지원
- 라. 청년의 생활 안정
- 마.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 4. 거창군 청년발전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 5. 기본계획이 여성 청년의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분석 및 평가
-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9조(청년발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인구교육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1. 거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과 창업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 창업지원금 지급 등 창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7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
2.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공연 등 행사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포상) 군수는 청년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단체 또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거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8, 표주숙의원의외 10인 발의
- 나. 회부일자 : 2019. 4. 8.
-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4.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표주숙 의원]

- 가.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알림장치 등 설치내용 반영 신설함(안 제5조 제6호)
 -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비 지원 확대, 지원중단 사유 신설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재송]

-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내외에서의 범죄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52조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알림장치 등 설치내용을 반영하고
- 안 제13조에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비 지원 확대, 지원중단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를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해야 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제4호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준용한다.”를 “준용함”으로 하며 같은 조에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범죄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음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관리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화장실 관리비일부 또는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2. 군수가 시설노후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u></p>	<p><u>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u></p>
<p>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할 경우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함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3. 필요할 경우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6. 범죄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음
<p>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관리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화장실 관리비일부 또는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2. 군수가 시설노후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8, 거창군수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9. 4. 8.
-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4.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진태 경제교통과장]

- 가.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부개정(2014. 5. 28.)되면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이 조례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현행 제2조)
 - 법령위배소지 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함(안 제6조)
 -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17조,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재승]

-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이 조례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현행 제2조의 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고
 - 안 제6조에서 법령위배소지 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하며
 -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조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조제2호의 사업자”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과 같은 조 제2항 중 “정압시설”을 “정압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7조,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시가스와 관련한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지방재정법 제17조는 보조금지원 일반적인 규정으로 삭제.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입법취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함</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p> <p>2.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p> <p>3. “공급관”이란 정압시설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p> <p>4. “정압시설”이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p>	<p><삭 제>▷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의된 용어이므로 삭제</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법령은 조례에 언급하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야 하므로 삭제</p>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이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2. 정압시설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정압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3.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③ (생략)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이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법에서 정압기 라고 쓰고 있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정압기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3.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법령과 달리 규정하여 법령위배소지. 조례에 법령 중복·재기 재사항을 규정할 필요없이 법규정 그대로 적용하여 구성하면되므로 성별규정은 삭제함.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209)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생략)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⑤ (생략)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을 두지 않는다.

<삭 제>▷(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209)모든 위원회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상 편의 등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⑤ (현행과 같음)

<삭 제>▷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근거하여 수당지급하면 되므로 이중기술로 삭제

<삭 제>▷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조례와의관계)에 따르면 되므로 삭제

<삭 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의견 18-0025 등 참조)이므로, 삭제함.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8, 거창군수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9. 4. 8.
-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4.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덕기 환경과장]

- 가. 제안이유
 -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한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계속 존치시킬 실익이 없으므로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인용법령을 삭제하여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법령 재기제 사항 삭제함(안 제2조)
 - 녹색성장위원회 폐지함(안 제3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재승]

- 본 조례안은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한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계속 존치시킬 실익이 없으므로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
 - 안 제1조에 인용법령을 삭제하여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 법령 재기제 사항을 삭제하고
 - 안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p> <p>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p> <p>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p> <p>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위임조례가 아니고 법인용을 삭제하여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88 : 자치조례에서 법령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에는 법령의 용어규정을 그대로 다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다.</p>

- 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

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2.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13.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를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7. (생략)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경상남도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7. (현행과 같음)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경상남도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삭 제>

▷ 녹색성장위원회 삭제에 따라 삭제

제3장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군 소속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거창군의회 의원이나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삭 제>

<삭 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 추진 계획, 재정, 법제도,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 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기업 고충처리 분야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성장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삭 제>

<삭 제>

들을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등)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장을 녹색성장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삭 제>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8, 거창군수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9. 4. 8.
-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4.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덕기 환경과장]

- 가. 제안이유
 - 현재 인터넷신고와 읍면사무소 방문신고로 운영 중인 대형스티커 판매를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봉투(PP) 50리터를 추가하여 환경미화원의 무게 부담을 줄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방법 등 정비(안 제18조, 제21조, 별표4)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행 규정 신설
 -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격 규정 신설
 - 종량제 봉투(PP) 50리터 판매가격 신설(안 별표3)
 - 건설폐기물매립장 폐쇄에 따른 규정 등 정비(안 제21조)
 -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용어 정비(조례 전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재승]

- 본 조례안은 현재 인터넷신고와 읍면사무소 방문신고로 운영 중인 대형스티커 판매를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봉투(PP) 50리터를 추가하여 환경미화원의 무게부담을 줄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8조, 제21조, 별표 4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방법 등을 정비하고
 - 안 별표 3에서 종량제봉투(PP) 50리터 판매가격 신설하며
 - 안 제21조에서 건설폐기물매립장 폐쇄에 따른 규정 등을 정비하고
 - 조례 전반에 걸쳐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4호, 제7조제1항, 제4장 제목, 제15조 조제목·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 조제목·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별표 5”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 6”을 “별표 2”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별표 6”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PP포대”를 “폴리프로필렌 마대(이하 “PP”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도·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 제6항) 중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 공급·판매 방법) ①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판매자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판매가격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지 아니할 때
2. 군수가 정한 영업상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번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신고를 한 장소와 다른 장소로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제19조 조제목 “(쓰레기 봉투의 매수)”를 “(종량제봉투의 매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봉투의”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로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주지시켜야”를 “주지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별표 5”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방법과 공급·판매 가격은 별표 3과 같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판매 가격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따른 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공원법」에 의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6조 제목 “(권한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등)”을 “(권한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임할 수 있다.”를 “위임한다.”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의2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표 3으로, 별표 5를 별표 1로, 별표 6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3(중전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중전 별표 5) 제목 중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생략)</p> <p>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 별표 5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5.~7.(생략)</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에 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6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⑤~⑥ <삭제2004. 2. 10></p> <p>⑦ (생략)</p> <p>제4장 쓰레기 봉투의 제작 및 봉투판매소 운영</p> <p>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①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현행과 같음)</p> <p>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5.~7.(현행과 같음)</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 제7항과 같음)</p> <p>제4장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봉투판매소 운영</p> <p>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p>

현 행	개 정 안
<p>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골목길 쓰레기 및 자연정화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야 한다.</p> <p>② <u>쓰레기봉투</u>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괴성 봉투와 <u>P·P포대</u>로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p> <p>▷pp는 이후 별표 1, 3에 나옴</p> <p>③ <u>쓰레기 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u></p> <p><u>제16조(쓰레기 봉투의 제작)</u> ① <u>쓰레기봉투</u>는 군수가 제작한다.</p> <p>② 군수는 <u>봉투</u>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거창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u>쓰레기 봉투</u>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u>쓰레기 봉투</u>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p> <p>⑤ <u>제2항에 따른 쓰레기 봉투사양은 별표 2와 같다.</u></p> <p>⑥ <u>쓰레기 봉투</u>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광고주와 계약으로 체결한다.</p>	<p>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골목길 쓰레기 및 자연정화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야 한다.</p> <p>② <u>종량제봉투</u>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괴성 봉투와 <u>폴리프로필렌 마대(이하 “PP”라 한다)</u>로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p> <p>③ <u>종량제봉투의 크기·용도·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u> ① <u>종량제봉투</u>는 군수가 제작한다.</p> <p>② 군수는 <u>종량제봉투</u>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거창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u>종량제봉투</u>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u>종량제봉투</u>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p> <p><u><삭 제></u></p> <p>▷별표 2는 규칙으로 정함</p> <p>⑤ <u>종량제봉투</u>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광고주와 계약으로 체결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7조(판매소의 신고) ① <u>쓰레기봉투</u>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판매소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군수는 <u>쓰레기봉투</u>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u>쓰레기봉투</u>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u>쓰레기봉투</u>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신고수리를 아니할 수 있다.</p>	<p>제17조(판매소의 신고) ① <u>종량제봉투</u>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판매소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군수는 <u>종량제봉투</u>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u>종량제봉투</u>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u>종량제봉투</u>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신고수리를 아니할 수 있다.</p>
<p>제18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①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u>쓰레기 봉투</u>는 <u>쓰레기봉투 판매소</u>(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쓰레기봉투 판매자</u>(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투공급을 아니할 수 있다.</p>	<p>제18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방법) ①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u>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u>는 <u>종량제봉투 판매소</u>(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u>종량제봉투 판매자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u>(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판매가격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p>
<p>1. <u>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u></p> <p>2. <u>판매자의 영업상 준수 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p> <p>3. <u>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u></p> <p>4. <u>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u></p> <p>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u>별표 3과 같이 쓰레기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u></p>	<p>② 군수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1. <u>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지 아니할 때</u></p> <p>2. <u>군수가 정한 영업상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번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p> <p>3. <u>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신고를 한 장소와 다른 장소로 변경한 경우</u></p> <p>4. <u>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u></p> <p>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u>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u></p> <p>▷ 별표 3은 규칙으로 정함</p>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쓰레기 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구입한 <u>봉투의</u>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u>단</u>, 한번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곤란한 것은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u>쓰레기봉투</u> 판매소에 이를 <u>주지시켜야</u> 한다.</p>	<p>제19조(종량제 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구입한 <u>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u>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u>다만</u>, 한번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곤란한 것은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u>종량제봉투</u> 판매소에 이를 <u>주지해야</u> 한다.</p>
<p>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u>별표 5와</u>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u>쓰레기봉투의</u> 판매가격으로 한다. 4.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u>폐기물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2와</u> 같다. <p>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산정은 <u>별표4 제1호 기준에 의하고 봉투판매 가격은 별표4의 2와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u></p>	<p>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u>별표 1과</u>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u>종량제봉투의</u> 판매가격으로 한다. <p><삭 제></p>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u>종량제봉투 가격 산정방법과 공급·판매 가격은 별표 3과</u> 같고, <u>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판매 가격은 별표 4와</u> 같다.</p> <p>▷ 후단은 별표 3 제1호 (주) 1)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p>
<p>제2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u>각호</u>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u>당해</u>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u>쓰레기 봉투</u>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u>하여야</u> 한다.</p>	<p>제2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u>각 호</u>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u>해당</u>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u>종량제봉투</u>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u>해야</u> 한다.</p>

현행	개정안
<p>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u>의한 도시계획시설</u>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p> <p>2. 공원(「<u>도시공원법</u>」에 <u>의한</u>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u>의한</u> 공원을 포함한다)</p> <p>3. 낚시터, 약수터,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p> <p>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u>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 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u>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u>하여야</u> 한다.</p> <p>제26조(권한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u>따른 군계획시설</u>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p> <p>2. 공원(「<u>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u>」에 <u>따른</u>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u>따른</u> 공원을 포함 한다)</p> <p>3. 낚시터, 약수터,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p> <p>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u>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를</u>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u>해야</u> 한다.</p> <p>▷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지침」으로 변경됨. 또한 조례에서 훈령이나 지침을 직접 인용하여 준용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아 문장정비_</p> <p>제26조(권한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u>위임한다</u>.</p> <p>▷ 위임을 확정적으로 규정해야 이 조문만으로도 위임의 법적효력발생</p> <p><삭 제></p>

거창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8, 거창군수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9. 4. 8.
-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4.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류지오 행복농촌과장]

- 가. 제안이유
 -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을 네트워킹하여 상호 공동체적 지원관계를 형성
 -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 효율적인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자금의 외부유출을 줄이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조직을 육성
 - 거창군 지역개발 사업의 전문성, 현장성, 지속성 강화로 지역사회의 역량과 요구를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 행정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민간협치 시스템 구축
 - 리더교육, 주민교육, 현장포럼, 선진지 견학, 마을대학 운영 등
 - 조직안
 - 센터장, 사무국장, 기획팀, 역량강화팀 등

○ 운영정상화 지원

- 인건비 : 40백만원(사무국장 1, 팀장 2명)
- 운영비 : 40백만원(활동비 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재승]

○ 본 동의안은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을 네트워킹하여 상호 공동체적 지원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 효율적인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자금의 외부 유출을 줄이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거창군 지역개발 사업의 전문성, 현장성, 지속성 강화로 지역사회의 역량과 요구를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나 법인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행정과 민간의 다양한 자원들을 네트워킹하여 상호 공동체적 지원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 효율적인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자금의 외부 유출을 줄이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나 법인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을 네트워킹하여 상호 공동체적 지원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 효율적인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자금의 외부 유출을 줄이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거창군 지역개발 사업의 전문성, 현장성, 지속성 강화로 지역사회의 역량과 요구를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나 법인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